

01 법무법인 지평지성 2011년 신년사

03 법률칼럼

- 변호인과 피의자의 신뢰관계 (금태섭 변호사)

07 열려라 중국

- 중국의 해외상표 및 저명상표의 보호 강도 강화 (조준금 중국변호사)

10 최신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부여 사무에 관한 처리규정 마련
- 청소년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규제 등

12 환경비즈니스 기고문

- [Global 트렌드(라오스)] 광물 개발에 외국인 자금 '밀물' (반기일 뉴질랜드변호사)
- [Global 트렌드(베트남)] 채권시장 급성장 전망...선물도 유망 (김주현 변호사)
- [Global 트렌드(러시아)] IT기업 유치 총력...자원의 존형 탈피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 [Global 트렌드(중국)] 소득 불평등 심화...사회불안 가중 (최정식 변호사)

15 업무동향

- LS그룹을 대리하여 '온산탱크터미널(주)' 공동투자 설립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 홍콩 Superfund의 한국시장 판매를 위한 금융감독원 등록 업무 수행
- 8개 출판사가 교과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과부를 대리하여 승소

18 지평지성 단신

- 지평지성, 동계 실무수습 실시
- 김성수 변호사, 2011년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로 재위촉
- 최승수 변호사, 엔터테인먼트법 국제학술대회 참석
- 임성택 변호사, 제1회 통일·북한분야 전문가 초청 강연회 참석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법무법인 지평지성 2011년 신년사

경인년 한 해 동안 저희 법무법인 지평지성을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희망찬 신묘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에게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여전히 계속되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눈앞에 다가온 법률시장개방 등으로 인해 저희 법무법인뿐만 아니라 법조계 전체가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평지성은 그러한 변화상황에 소극적으로 휩쓸려 가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지난 4월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라오스에 합작법무법인을 열고, 명실상부하게 중국, 일본, 러시아, 베트남 및 동남아시아 업무를 원스톱으로 연결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를 오픈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브라질 업무까지 개시하여 저희 업무 영역을 중남미까지 확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의 차별화된 장점인 “공익성과 윤리성”을 보다 실천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는바, 그런 노력의 결실로 국내외 여러 언론 매체에서, 업무에서의 뛰어난 전문성과 실력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해 헌신하는 자세와 윤리적인 성실성까지 인정받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올해 역시 아직까지는 국내외 경제상황이 뚜렷한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남북관계 역시 긴장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률시장 개방의 움직임은 본격화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배출될 로스쿨 졸업생들로 인한 국내 법조계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 지평지성은 이러한 위기의 시기를 역으로 도전의 기회로 삼아, 저희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항상 용기 있게 도전하고, 젊고 패기 있게 맞서 나가는 자세’로 올해 다시 한 번 멋진 비상을 하려고 하며, 이를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고객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되기 위해 구성원들의 전문성과 실력 향상에 더욱 정진하고, 대외적으로 고객에게 더욱 성실하고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방식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며, 국내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글로벌 로펌이 되기 위해 기존 해외시장에서의 선도적인 지위를 더욱 굳건히 하면서 새로운 영역과 해외시장에도 항상 먼저 도전하는 자세를 견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과 자세를 발판으로 삼아, 올 한해도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모든 분들에게 약속 드렸던, '고객과 사회에 헌신하고 기여하는 바람직한 전문가 공동체'와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명문 로펌'이라는 목표에 더욱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 1.

법무법인 지평지성

(법률칼럼)

변호인과 피의자의 신뢰관계



금태섭 변호사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가끔 황당한 일을 겪는 때가 있습니다. 찾아온 의뢰인과 상담하고 수임 계약을 했는데 며칠 후 찾아와서 선임을 취소하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나 검찰 수사관이 이런 사건에는 변호사를 살(?) 필요가 없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알아서 잘 처리해줄 것이니 괜히 아까운 돈 낭비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선임계를 제출한 다음 날 사임계를 제출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의뢰인이 이런 부탁을 할 때에는 두말없이 사임을 합니다. 이미 신뢰관계에 금이 갔기 때문에 무리해서 위임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불신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사 사건의 결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애초에 변호인이 없어도 잘 해결될 수 있었을 텐데 괜히 비용을 들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면 괜히 담당 수사관의 비위를 거슬러서 일을 그르치게 된 것 아니냐는 원망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책망을 받고 돌아오는 의뢰인을 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변호사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사임 이후의 경과가 반드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건이 쉽게 종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의 사건에서 의뢰인들은 한참 후에 낭패한 얼굴로 찾아와 다시 선임을 부탁드립니다. 애초의 약속과는 달리 수사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결과도 장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임을 했는데 검찰에서 다시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조사를 받거나, 혹은 일단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재기수사명령을 받아서 더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처했으면 어렵지 않게 해명이 될 수도 있던 사건이 잘못된 대응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상대방과 무리한 조건으로 합의할 것을 종용당하기도 합니다.

변호인의 선임을 말리는 수사관의 의도가 반드시 악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사건 피의자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많습니다. 적지 않은 보수를 지급하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중요한 사건에서는 선임료를 아껴서 차라리 피해자와 합의를 보거나 공탁을 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변호인과 의뢰인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것으로서 법조윤리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좋은 의도로 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신뢰는 위임 관계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서 고도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대한변협회의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가 "수임사건의 상대방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 본인과 직접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변호사를 배제하고 상대방 본인과 직접 만나게 되면 신뢰관계를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변호사 직무규정 제25조도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법령상의 자격을 갖는 대리인이 선임된 때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리인의 승낙을 얻지 않고 직접 상대방과 교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미국의 표준규칙이나 유럽의 행위규범도 상대방 대리인의 승낙 없이 본인을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을 만나는 행위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데, 하물며 선임을 철회하라고 권유하는 행위가 부당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당사자의 운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와 변호인 사이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검사가 변호인의 동의 없이 피의자와 직접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징계를 받은 일도 있습니다.¹ 우리나라의 검찰이나 경찰은 변호인이 있는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소환 통보 등을 피의자 본인에게 직접

1 Matter of Howes 123 N. M. 311, 940 P. 2d 159(1997)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관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사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피의자라도 하더라도 검사나 수사관은 마치 자신이 중립적인 입장에 있거나 공정하다는 암시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자체는 직권적인 것이지만, 기소되면 대립당사자의 입장에 서게 된다는 점에서 소추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심리적으로 약자의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는 피의자는 변호인보다는 수사 담당자의 말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행동은 변호인에 대한 신뢰를 결정적으로 해치는 것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권유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형사 변호인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변호사들의 책임이 크지만, 아직도 변호인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변호인의 역할은 피의자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게 한 다음 선처를 구하는 것이라고 보는 일부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그릇된 인식에도 원인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끔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권유하는 변호인의 행동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러한 생각에 기인한 것입니다.

변호인과 피의자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행동은 개별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를 쉽게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변호인의 역할에 대한 일반의 믿음을 잃게 만들어서 형사 정의의 실현을 어렵게 하고 법조 전체에 대한 신뢰도 추락시키게 됩니다. '알아서 잘 해주겠다'는 말에 현혹된 피의자가 지나치게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실제적 진실과 먼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경험에 비추어볼 때 피의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높습니다. 부적절하거나 법조 윤리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행태에 대해서는 변호사들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협에서도 검찰에 이러한 관행의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절차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민주주의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입니다.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변호인 선임 문제에 대해서까지 충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형사적 정의의 기본을 이해하지 못 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결국 전관예우의 관행으로 연결될 우려도 있습니다. 검사나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경찰관과 날카롭게 대립하는 변호인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한 실력만으로 무장한 형사변호사가 설 곳은 극히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조에서 이러한 잘못된 풍토가 하루빨리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Jipyong & Jisung](#)

(열려라 중국)

중국의 해외상표 및 저명상표의 보호 강도 강화



조준금 중국변호사

I. 서론

최근 중국은 상표와 관련한 일련의 보호 법률, 법규, 규정을 반포하여 상표 등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이는 이미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 특히 인터넷 쇼핑 및 홈쇼핑 등의 출현과 함께 판매경로가 다변화되면서 해외상표 및 저명상표를 침해하는 현상이 곳곳에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침해 행위의 규제를 위하여 국무원 판공청은 2010년 10월 <지적재산권 침해 및 저급 모조품 판매 행위 규제의 통지(국판발[2010]50호)>를 발표하여 전국적인 범위의 지적재산권 침해 및 저급 모조품 판매 행위의 규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II. 중국의 해외상표 및 저명상표 위반 규제 강도 강화

1. 정책의 제정

상표침해행위를 규제하는 주관기관으로서 국가 공상총국은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및 저급 모조품 판매 행위 규제의 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 두 차례 <전국 공상계통 지적재산권 보호 및 집행 업무 영상통화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지적재산권 전략 요강>을 실현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그에 따라 철저하게 상표 전략을 시행하고 상표 등록, 운용, 보고 및 관리 능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진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국가 공상총국이 <중점 해외상표 및 저명상표 위반 안건 적발 실시방안(약칭<실시방안>)>을 발표하여, 전문적으로 해외상표전용권 및 저명상표권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활동의 전개 방안 및 발전된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우수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한 것입니다.

2. 준비 활동

<실시방안>은 해외상표 및 저명상표 위반 안건 적발에 대한 준비 활동을 세 단계로 나누어 규정하였습니다.

- 첫 번째 단계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월 말까지의 기간으로, 해외상표 위반 안건을 적발하고 단속하는 데 힘쓴다. 중국의 각 지역은 적극적으로 중국이 기존에 가입한 국제 지적재산권 공약 또는 협의를 이행하여 영향력이 큰 해외상표 침해 안건의 적발에 힘써,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모조품이 유럽, 미주, 아프리카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통제한다.
- 두 번째 단계는 2011년 1월 말부터 2011년 2월 말까지의 기간으로, 저명상표 권익을 침해하는 안건을 엄격히 적발하는 집중 단속기간이다. 각 지역은 상호 협조와 협동을 통하여 함께 저명상표 권익을 침해한 안건을 적발하도록 노력한다.
- 세 번째 단계는 명절 및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특수 기간으로, 중국 각 지역은 '설명절' 및 '양회' 시기의 시장 안전을 안정화하는 업무를 위하여, 도시와 농촌 시장 등의 지방을 아우르는 범위에서 각 지역의 도매시장, 슈퍼마켓, 단체무역시장 등의 시장을 검사한다.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품의 상표를 침해한 모조품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한다.

중점지역으로는 북경, 천진, 상해, 절강, 강소, 안휘, 광둥, 산둥, 복건, 하북, 사천, 하남 등의 성 및 직할시가 있으며, 중점상품으로는 의류, 잡화, 가방, 가전제품, 핸드폰 및 부속, 약품, 씨앗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점지역 및 중점 상품을 확정함으로써, 해외상표 및 저명상표 침해 규제의 지침을 제공하여 해외상표 침해 규제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III. 결론

한국의 브랜드, 특히 의류 및 핸드폰 등의 영역에서의 상표들은 중국 대륙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조에 따라 특히 복제가 간단한 의류 영역에서는 무수한 모조 상품이 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조품은 한국 상표권자의 권한을 위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제품의 질도 매우 조악하여 한국의 저명상표 및 중국에 진출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많은 한국 기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경로로 판매된 모조품에 의한 침해는 전통적인 사법 방식으로는 구제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중국이 전개하는 지적재산권 침해 및 저급 모조품 판매 규제 규정에 따른 규제가 한국 브랜드를 포함하는 해외상표의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은 외국상표 및 저명상표 보호의, 특히 새롭게 출현한 전자상거래 방식을 이용한 지적재산권 침해 상품의 판매로 인한 침해 구제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Jipyong & Jisung](#)

(최신 법령)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부여 사무에 관한 처리규정 마련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제정(법무부령 제727호, 2011. 1. 1. 시행)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행하는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사무절차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처리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 확정일자를 부여하려는 경우 읍장, 면장, 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주택임대차계약증서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보증금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인지,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지, 이미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규칙 제3조).
3. 확정일자부여의 구체적 방법으로서, 확정일자는 계약증서의 여백에 확정일자인을 찍고, 인영 안에 날짜와 확정일자부의 등부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적는 방법 등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에는 확정일자부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규칙 제4조, 제5조).
4. 다운로드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제정\(법무부령 제727호, 2011. 1. 1. 시행\)](#)

2. 청소년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규제 등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대통령령 제22541호, 2010. 12. 21. 시행)

1.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환전이 여전히 성행하여 불법적인 게임이용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제한하도록 한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규정을 2년간 연장하였습니다. 다만 게임이용에 따라 획득된 결과물의 제공이 가능한 게임물 대수 및 설치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였습니다(시행령 제16조 제1호 나목, 부칙 제2조).

2. 다운로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2541호, 2010. 12. 21. 시행)

Jipyong & Jisung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한경비즈니스 기고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한경비즈니스 국제면 기고문)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9월부터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 국제(Global) 면에 정기적으로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러시아 등 한국기업 및 자본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각국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기고되는 내용은 월간 지평지성 뉴스레터에 모아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달의 기고]

한경BUSINESS

No. 785 | 2010. 12. 22.



반기일
뉴질랜드변호사
kiban@
jipyong.com

[Global 트렌드]

라오스의 농업·광산업 투자

광물 개발에 외국인 자금 '밀물'

라오스는 인도차이나반도 중앙에 있는 개발도상국가다. 인구는 약 650만 명으로 지난해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853달러 정도다. 인도차이나 지역 국가 대부분은 세계경제 침체와 무관하게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라오스도 연평균 7% 이상의 고도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 및 태국 등 주변 국가들보다 인구는 적지만 메콩강을 이용한 수력발전과 풍부한 광물 자원이 라오스 경제성장의 동력이다...

[PDF](#) [e-Link](#)



김주현 변호사

jhkim@

jipyong.com

[Global 트렌드]

베트남 자본시장

채권시장 급성장 전망...선물도 유망

베트남의 주식거래 시장은 2000년에 개장한 호찌민거래소(HOSE)와 2005년에 개장한 하노이거래소(HASTC) 2개로 이뤄져 있다. 두 거래소는 각각의 기준에 따라 상장 및 주식의 거래를 중개하고 있다. 2010년 12월 현재 호찌민거래소에는 274개 회사가, 하노이거래소에는 358개 회사가 상장돼 있다. 비상장 주식 거래 시장으로 하노이거래소에 UpCom(unlisted public company market)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주로 민영화가 진행 중인 국유 기업들의...

[PDF](#) [e-Link](#)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smlee@

jipyong.com

[Global 트렌드]

러시아판 실리콘밸리 '스콜코보'

IT 기업 유치 총력...자원 의존형 탈피

최근 러시아 언론이 연일 스콜코보(Skolkovo)와 관련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스콜코보와 관련된 기사에는 '러시아판 실리콘밸리', '러시아 경제 현대화의 동력', '러시아 테크노 허브'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도대체 스콜코보가 어떤 곳이기에 이처럼 러시아 언론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정식 명칭은 '스콜코보 혁신센터'다. 스콜코보 혁신센터는 모스크바 시내에서 서쪽으로 약 30km 떨어져 있는데 행정구역상으로는...

[PDF](#) [e-Link](#)



[Global 트렌드]

중국의 임금·노동문제

소득 불평등 심화...사회불안 가중

최정식 변호사

jschoi@

jipyong.com

중국 상하이의 겨울은 음울하고 옷 속을 파고드는 습한 한기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낮게 느껴진다. 안후이성과 쓰촨성 등 상하이 인근 지역에서 온 농민공(農民工)들은 최근 치솟는 물가로 상하이의 겨울을 나기가 더욱 힘들다. 농민공은 농촌 지역에서 성장하고 농업에 종사하다가 농촌의 저성장과 취업 기회 부족으로 대도시로 이주한 농촌 출신 근로자를 말한다. 2008년 말 기준 중국의 도시화율은 45.6%인데 매년 도시화율이 1%포인트 정도.

[PDF](#) [e-Link](#)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소개]

-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소개 (홈페이지)
-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소개 (PDF)

(업무동향)

LS그룹을 대리하여 '온산탱크터미널(주)' 공동투자 설립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LS그룹은 지난 14일 도쿄 프린스호텔에서 일본 석유판매 전문기업인 나카가와물산과 한·일 합작 기업 '온산탱크터미널(주)' 공동투자 설립에 대한 조인식을 거행하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LS그룹을 대리하여 '온산탱크터미널(주)' 공동투자 설립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온산탱크터미널(주)의 전체 투자금액은 약 550억원 규모로, 울산광역시 온산공업단지 LS니꼬동제련 용지에 터미널을 건설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석유류제품의 인수 및 저장, 분배사업을 하게 됩니다.

[관련기사]

- 연합뉴스 - LS컨소시엄, 탱크터미널 회사 설립 (2011. 1. 16.)
- 매일경제 - LS, 日나카가와와 탱크터미널 사업 진출 (2011. 1. 16.)
- 한국경제 - LS, 유류 탱크터미널 사업 진출 (2011. 1. 16.)

[담당변호사]



강경국 변호사



이태현 변호사



노충욱 미국변호사

(업무동향)

홍콩 Superfund의 한국시장 판매를 위한 금융감독원 등록 업무 수행

지평지성은 Superfund Group의 홍콩지사를 대리하여 케이만 제도에 설립된 2개 펀드의 한국시장 판매를 위한 금융감독원 등록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에 등록된 펀드는 금과 귀금속 등과 관련된 선물 및 현물에 주로 투자하는 대체투자 전문 헤지펀드로, 그 운용사는 그레나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평지성은 이후로도 Superfund의 한국시장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자문할 예정이며, 향후 한국시장 진출을 타진하는 다양한 외국계 펀드의 금융감독원 등록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담당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김도요 변호사



이은영 변호사



홍진경 미국변호사

Jipyong & Jisung

(업무동향)

8개 출판사가 교과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과부를 대리하여 승소

지난 12월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교과서 채택방식이 검정제에서 인정제로 바뀌어 손해를 봤다며 (주)교학사 등 8개 출판사와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지평지성은 이 소송에서 교과부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교학사 등 출판사들은 "공고에 따라 회사별로 약 4억원의 비용을 들여 교재를 개발했는데 정부가 정책을 변경하여 교재가 무용지물이 되는 등 피해를 봤다"며 회사당 3억9천700만~8억5천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낸 바 있으며, 이에 재판부는 "교과서 검정제도의 개편은 초·중등교육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정당한 처분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연합뉴스 - 법원 "검정교과서 폐지는 정당한 처분" (2010. 12. 31.)
- 매일경제 - 법원, "검정교과서 폐지는 정당한 처분" (2010. 12. 31.)
- 서울경제 - 법원 "검정교과서 폐지 처분 정당" (2010. 12. 31.)

[담당변호사]



임성택 변호사



박성철 변호사



장품 변호사

(지평지성 단신)

지평지성, 동계 실무수습 실시

지평지성이 2011년 1월 3일부터 2주간의 일정으로 2학년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계 심화인턴 실무수습을 시작하였습니다.

지평지성은 동계 심화인턴 실무수습자로 선정된 20명을 대상으로 소송서면 작성, 의견서 작성, 계약서 작성, 리서치, 토론 등 로펌의 구체적인 업무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평지성은 심화인턴 실무수습 외에도 1월 10일부터 사법연수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무수습을, 1월 17일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의 1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무수습을 시작하였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2011년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로 재위촉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성수 변호사)

지평지성의 김성수 변호사는 2009, 2010년에 이어 2011년도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 산업안전 및 산재보상, 노동조합 등 노동관련법 자문을 위하여 10명 내외의 자문변호사를 두고 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주로 근로기준, 산업안전 및 산재보상 관련 법령의 자문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승수 변호사, 엔터테인먼트법 국제학술대회 참석



(사진: 법무법인 지평지성 최승수 변호사)

2011. 1. 14. 지평지평 IP·IT팀의 최승수 변호사가 '일본 문화콘텐츠산업의 동향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한 엔터테인먼트법 국제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일본의 미술범죄', '일본의 스포츠에이전트에 관한 법적 고찰', '일본의 드라마제작과 매니지먼트'라는 3개의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 최승수 변호사는 제2주제의 발표자로 나선 카토 키미히토 일본 바스코다가마 로펌 변호사의 '일본의 스포츠에이전트에 관한 법적 고찰'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오일환 중국정법대 교수와 함께 토론을 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법률신문 - 엔터테인먼트법 국제학술대회 (2011. 1. 13.)

임성택 변호사, 제1회 통일·북한분야 전문가 초청 강연회 참석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임성택 변호사)

2011. 1. 15. 통한법전(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모임)이 주최하는 제1회 통일·북한분야 전문가 초청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통일·북한분야에 필요한 법조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강연회에 로스쿨 재학생 및 로스쿨 입학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임성택 변호사를 비롯하여 (사)성통만사(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김영일 대표와 법무부 통일법무과의 박기동 검사 등이 참석하여 강연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통한법전은 통일문제에 관심이 많은 로스쿨 재학생들이 모여 법, 제도 측면에 대한 토의와 연구를 하는 실천적 학술·봉사 모임입니다.

[관련기사]

- 법률저널 - 통일·북한분야 전문가 초청 강연회 개최 (2011. 1. 7.) [Jipyong & Jisung](#)



지평지성
JIPYONG & JISUNG

<http://www.jipyong.com>

법무법인 지평지성

주사무소

(100-743)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11층 Tel : 02)6200-1600 Fax : 02)6200-0800

강북 분사무소

(100-161)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25 HSBC빌딩 15층 Tel : 02)6200-1800 Fax : 02)6200-0830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100-743)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11층 Tel : 02)6200-0880 Fax : 02)6200-0804

상해 사무소

Room 2310, Shanghai Maxdo Center, No. 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 86-21-5208-2800 Fax: 86-21-5208-2807

호치민 사무소

#1605, Centec Tower, 72-74 Nguyen Thi Minh Khai Street, Ward 6, District 3,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8-3910-7510 Fax: 84-8-3910-7511

하노이 사무소

Suite 1003, 10th Fl., Daeha Business Center, 360 Kim Ma St., Ba Dinh Dist., Hanoi, Vietnam Tel: 84-4-6266-1901 Fax: 84-4-6266-1903

캄보디아 사무소

SK-Shinah Office, 2F No.797, Monivong Blvd. & St. 484, Phsar Doeum Thkov, Khan Chamkarmon, Phnom Penh, Cambodia Tel : 855-23-726-897 Fax : 855-23-726-457

라오스 사무소

LLC Bldg, Nongbone Road, Saysetha District, Vientiane, Laos Tel : 856-20-301-9820 Fax : 856-21-264-344